

서울고등법원 2018. 12. 13 선고 2018나2028370 판결 [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18. 12. 13 선고 2018나2028370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5. 15 선고 2017가합544094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

피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C

변론 종결 2018. 11. 22.

판결 선고 2018. 12. 13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7가합544094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[청구취지]

피고는 원고에게 372,689,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. 6. 2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
[항소취지]

1.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

2. 피고는 원고에게 172,689,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. 6. 2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
(제1심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하였고,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다)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,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).

○ 제1심 판결문 중 제8쪽 제16행, 제11쪽 제12행, 제12쪽 제3행, 제13쪽 제2, 5행, 제14쪽 제16행, 제16쪽 제4행, 제17쪽 제20행의 각 '증인'을 각 '제1심 증인'으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 판결문 중 제16쪽 제4행의 '표현한 사실'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.

"{M(원고 직원)이 2016. 7. 20. 피고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'귀사 사정을 위하여 긴급 지원한 2억원'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(갑 12호증)}"

○ 제1심 판결문 중 제18쪽 제20행의 '2016. 9. 24.'을 '2016. 9. 21.(갑 14호증)'으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 판결문 중 제23쪽 제19, 20행의 '이 판결'을 '제1심 판결'로 고쳐 쓴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.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한규현

판사김용하

판사이상호